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2025년 9월, 온실가스 감축·산업안전·상법 및 공시기준 개정 등 ESG 이슈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GRI·SASB 등 글로벌 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성장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9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Contents

- 01 ESG Keyword [온실가스 감축 · 산업안전 · 상법 개정 · 글로벌 공시 기준 개정]
- 02 ESG Trend [글로벌 공시기준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GRI, SASB를 중심으로]
- 03 ESG Policy [2025년 9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 04 ESG Event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온실가스 감축

산업부,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5.07.2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75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태양광,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10대 핵심 기술 분야¹를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진단했다. 정부는 전력화 확대와 청정 연료 도입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청정전력, 청정연료, 청정인프라(에너지 저장장치, 전력망, 에너지 AI 등)로 구분된 산업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¹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 ▲(청정전력)태양광, 해상풍력, SMR ▲(청정연료)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청정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李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해야...전기요금 인상 불가피"(ESG경제, '25.08.17)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2>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축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배출권 거래제의 총량 배분을 강화해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인정...'2035 NDC'에 포함(전자신문, '25.08.18)

<https://www.etnews.com/20250818000353>

정부는 '히트펌프'²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며,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설치 시 지원하는 한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수소차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 때까지 꾸준히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² 히트펌프: 외부 열원(공기열, 폐열 등)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열매체를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높이는 기술(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효율이 높지만 난방용보다는 온수 공급에 주로 사용 중. 에너지 절감 및 탄소감축이 가능한 설비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보일러를 대체할 고온용 히트펌프 개발이 관건

ESG Keyword

고용노동부,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 '25.08.1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91

8월 14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업³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당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설명,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³ 건설업의 최근 3년(2022~2024)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341→303→276명)이나 타 업종 대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 중. 2025년 상반기에도 건설업 사망자 수는 제조업 사망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참고)

산업재해 '고강도 제재' 예고... 中企 "예방 중심 지원책이 우선"(중소기업뉴스, '25.08.18)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28>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중대재해를 반복하거나 다수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등록말소·영업정지·입찰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강경 조치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방 중심의 지원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 개선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도 열차사고로 2명 사망...코레일 최근 5년간 산재로 10명 숨져(동아일보, '25.08.1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19/132210910/1>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7명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 원인은 경찰과 코레일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155명 중 코레일 직원이 10명이었다.

[단독] 안전모 미착용·온도계 미설치...'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머니투데이, '25.08.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1900401468040>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시 '건별 과태료 부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 사항마다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같은 기업 내에서 반복될 경우 금액이 가중된다. 이 제도는 법원의 형사처벌 절차 대신 행정부가 직접 제재를 가해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과 과징금 제도 도입의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제도의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SG Keyword

與 '더 센 상법'도 본회의 강행...자사주 소각 3차 개정 논의도 개시 (중앙일보, '25.08.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512>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규정, 소액주주의 이사·감사 선임 영향력을 높인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후보 한 명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소액 주주들이 연대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 용이해진다. 또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은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한다. 민주당은 이어 3차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매각함으로써 의결권을 확보하던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스톡옵션 목적 외에는 모두 소각하는 방법이다. 재계는 반대했지만 개인투자자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법 3차 개정은 '자사주 의무 소각'..."배임죄 폐지도 함께 논의" (아시아타임즈, '25.08.26)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826500387#_enliple#_mobwcvr

1·2차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여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8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세 번째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필요 시 임직원 보상이나 전환사채 행사 목적의 자사주 보유는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매입 즉시 소각해야 하나, 2011년 개정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주가 하락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배임죄 합리화를 병행 논의하며 자사주 소각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2025 개정 '상법' 주요사항 ('25.8.25. 기준)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시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제382조의3)	회사	회사 및 주주	2025.7.22.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비율 상향 조정 (제542조의8 등)	(명칭)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2026.7.23. 단, 구성 비율은 시행 후 1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3% 룰 확대 적용 (제542조의12)	의무선임비율 이사 총수의 1/4	의무선임비율 이사 총수의 1/3	2026.7.23.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출 시에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모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2027.1.1.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제542조의12)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개최 병행 의무화	2027.1.1.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 (제542조의7)	기본 1인 정관으로 2인 이상 선임 가능	기본 2인 정관으로 3인 이상 선임 가능	공포* 후 1년
	정관으로 배제 가능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	공포 후 1년 시행 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 소집부터 적용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참고 재구성 * 1차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 공포, 2차 개정안은 9월 4일 현재 미공포

ESG Keyword

EU, 중소기업 ESG 공시 기준 'VSME' 채택...공급망 정보요구 상한선도 명시(임팩트온, '25.07.3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ESG 공시 기준인 VSME를 권고안 형태로 채택하고, 공급망 내 과도한 정보 요청을 제한하는 '정보요구 상한선' 개념을 함께 제시했다. VSME는 기본 모듈과 종합 모듈로 구성되며, 중대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가 선언만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ESG 정보를 요구할 때 VSME를 기준으로 삼도록 권장해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VSME를 활용한 자발적 공시는 지속가능 금융 접근성 확대와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s, VSME)

비상장 중소기업(250인 미만 사업체)이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간단하고 간소화된 프레임워크

• 목적

- 1) 대기업의 데이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
- 2) 은행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 개선
- 3)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 4)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에 기여

• 접근 방식: 2가지 모듈을 중심으로 구성

1) 기본 모듈(The Basic Module)

소규모 사업체(직원 10명 미만)를 위한 모듈. 11개의 정보 공개(disclosur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 사슬 파트너에게 가장 요구되는 핵심 지속가능성 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및 Scope 2), 내부 인력 근로환경 지표,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핵심 정보 공개가 포함됨.

2) 종합 모듈(Comprehensive Module)

기본 모듈을 기반으로 하며, 은행, 투자자 및 가치 사슬 파트너가 중소기업에 자주 요청하는 9가지 추가 공시에 중점. 예를 들어, ESG 관행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공시 C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 계획(공시 C3), 가치 사슬 내에서 발생한 사고(공시 C7), 그리고 EU 파리협정 연계 벤치마크 (PAB)*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지 여부(공시 C8)를 다룸. VSME는 중대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즉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연성과 유용성을 높임. 이 모듈식 구조는 ERS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당히 간소화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 규정(SFDR, EBA ESG pillar 3, and Benchmark regulation)과의 일치성을 보장함.

* EU PAB(EU Paris-Aligned Benchmark): 유럽연합(EU)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 관련 벤치마크 기준 중 하나

[출처] Press Release - [EFRAG Welcomes European Commission's Recommendation on VSME](#) (25.07.30)

ESRS 간소화 초안 공개...공시 항목 57% 삭제, 이중 중대성도 완화(임팩트온, '25.08.0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28>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가 공개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간소화 초안⁴은 공시 항목과 데이터포인트를 절반 이상 줄여 기업 친화적으로 재설계되었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단순화해 기업이 자사 사업모델과 리스크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정한 표현(Fair Presentation)' 원칙⁵을 도입해 IFRS 등 기존 재무공시 기준과의 정합성도 강화했다. 또한, 경영진 요약문 도입, 전환 유예조치, 가치사슬 데이터 축소 공시 허용 등 실무 중심의 완화 조치를 포함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번 초안은 9월 말까지 의견수렴 후 11월 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최종 기술자문(Technical Advice)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⁴ 대신경제연구소는 EFRAG의 ESRS 간소화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주요 내용을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할 예정

⁵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실에 기반해 사용자 관점에서 신뢰 가능하고 의미 있게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ESG Trend

글로벌 공시기준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 GRI, SASB를 중심으로⁶

【요약문】

- 新정부가 ESG를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ESG 공시 의무화와 ESG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GRI, SASB와 같은 주요 국제 공시기준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할 ESG 공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상장법인 204개사 중 203개사가 GRI 표준을, 177개사는 SASB 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동 기준 개정은 향후 공시 체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7년을 기점으로 적용될 예정임
- 개정 기준은 IFRS S1·S2⁷와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이중보고 부담 경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정량지표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 기후전환 계획, 정의로운 전환 등을 포함한 GRI 102와 에너지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 GRI 103을 발표함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9개 우선순위 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41개 산업에 대해서는 5개 주제(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노동 관행, 근로자 건강 및 안전) 지표를 정비하여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 기업들은 향후 1~2년 내 ESG 데이터 체계 고도화, 내부 공시기준 정비 등 공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본문】

I. GRI

1. 개정 취지와 포인트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은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으로서, 공시 프레임 워크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2024년 KPMG 지속가능성 보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5,800개 기업 중 71%가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⁸ 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⁹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있음
- 이에 따라, GRI는 정량적인 수치 중심의 기존 공시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 및 IFRS S2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GRI 201-2(기후변화 관련 재무영향), GRI 302(에너지), GRI 305(온실가스 배출)를 통합·개정한 GRI 102(기후변화)와 GRI 103(에너지)을 2025년 6월 발표함

⁶ 이하 내용은 GRI 및 SASB 개정 원문을 토대로 대신경제연구소가 작성하였으며, SASB 항목 일부 용어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함

⁷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은 SASB를 관리하던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와 기후공시를 주도하던 CDSB(Climature Disclosure Standards Board)를 통합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였음.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과 S2를 제정하였으며,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S2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회계기준임

⁸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 변화의 위험과 그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⁹ 1970년대 석유 위기를 계기로 OECD 산하에 설립되어 3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독립 기구로서 세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기관

ESG Trend

2. 핵심 내용

1) GRI 102: Climate Change 2025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중심 공시에서 확장되어, GRI 102(기후변화)는 기후변화 완화 전략, 기후변화 적응 전략, 온실가스 제거 및 탄소배출권 활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등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더욱 통합적인 공시 체계를 요구함
- GRI 102(기후변화)는 기업의 기후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영향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적인 정보와 정성적인 정보를 균형 있게 반영함

표1. GRI 102(기후변화) 공시체계 및 주요 변경사항

기존 GRI	GRI 102: Climate Change 2025		신규 및 개정 내용
201-2	102-1	기후변화 완화 ¹⁰ 를 위한 전환 계획	- GRI 201-2에서 정의한 재무적인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 추가 - 전환 계획과 1.5°C 경로 또는 SBTi(과학적 감축 목표) 부합 여부 - 전환 계획에 대한 이행비용, 거버넌스 역할, 사업전략 내 통합수준, 목표 및 달성수준 - 정의로운 전환 부합 여부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전환 계획으로 인한 사회환경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201-2	102-2	기후변화 적응 ¹¹ 계획	- GRI 201-2에서 정의한 재무적인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 추가 - 적응 계획에 대한 이행비용, 거버넌스 역할, 사업전략 내 통합수준, 목표 및 달성수준 - 정의로운 전환 부합 여부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적응 계획으로 인한 사회환경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신규	102-3	정의로운 전환 ¹²	- 전환 및 적응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 수 공시 - 신규 채용 직원, 해고 또는 재배치된 직원, 재교육을 받은 직원 - 신규채용 직원 중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은 직원 - 전환 및 적응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지역 정보
305-5	102-4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진행 현황	- 기존 GRI 305-5에서 정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측정방법론 이외에 아래 내용 추가 - 감축 목표 및 달성 수준, 감축 목표 적용 지역 - Scope 1, 2, 3에 대한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여부
305-1	102-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산정 시, GHG프로토콜에 따라 상세내역 공시
305-2	102-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산정 시, GHG프로토콜에 따라 상세내역 공시
305-3	102-7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산정 시, GHG프로토콜에 따라 상세내역 공시
305-4	102-8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원단위 배출량 산정 시, GHG프로토콜에 따라야 하며 상세내역을 공시해야 함
신규	102-9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 제거	- 온실가스 제거량, 저장(storage) 풀 유형별 위험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 - 온실가스 제거로 인한 사회환경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신규	102-10	탄소 크레딧	- 취득한 탄소 크레딧의 총량,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품질 기준 충족 여부 - 해당 프로젝트의 사회환경 영향과 지속적 모니터링 여부

¹⁰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줄이고 흡수원을 강화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활동을 의미함

¹¹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¹² GRI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노동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동 개념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규정함

ESG Trend

2) GRI 103: Energy 2025

- GRI 103(에너지)은 에너지 소비, 절감, 효율성, 재생에너지 도입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반영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단순한 에너지 소비량 및 절감 실적의 정량 공시를 넘어서, 에너지 전환 전략의 실효성, 거버넌스 체계,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영향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공시 체계로 재구성함
-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에너지 정책 수립 여부, 경영진의 관여 수준 등 전략적이고 실행 중심적인 항목들이 새롭게 포함되어 기업의 에너지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요구됨

표2. GRI 103(에너지) 공시체계 및 주요 변경사항

기존 GRI	GRI 103: Energy 2025		신규 및 개정 내용
신규	103-1	에너지 정책 및 공약	•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와 의견 반영 방식
302-1	103-2	조직 내 에너지 소비 및 자가발전	• 지표의 통합, 세분화 등을 통하여 기존 지표를 재분류하고 아래 내용 추가 - 자가 생산된 에너지의 소비량과 판매량(에너지원별 세부내역 포함) - 전력 구매 시 품질 기준 충족 여부
302-2	103-3	가치사슬 전반의 에너지 소비	• GRI 302-2에서는 조직 외부의 산정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범위를 가치사슬 전반(Upstream, Downstream)으로 명시 • 추정치 활용 가능하나 이에 대한 설명 포함
302-3	103-4	에너지 집약도	• 에너지 집약도 지표 공시할 경우, 단위(분모, 분자)를 명시 • 집약도 산정 시 분자의 데이터와 분모의 데이터 산정범위를 일관되게 적용
302-4, 302-5	103-5	에너지 소비 감축	• GRI 302-4와 GRI 302-5에서는 감축된 에너지 소비량, 제품 및 서비스(가치사슬 후방)에서의 감축된 에너지 소비량 중심에서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확장하고 어느 단계에서의 감축 성과인지 명시

3. 적용 시기 및 향후 일정

- GRI 표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면 GRI 102(기후변화)와 GRI103(에너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간하는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자율표준인 만큼 조기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GRI는 이를 권장하고 있음
- GRI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고 있음

표3. GRI 주요 개정 일정

GRI Standard	GRI Disclosure	공개의견 수렴기간	발표 예정일
GRI Topic Standards Project for Labor	• GRI 202, 401, 402, 404, 405, 406, 407, 408, 409, 414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	• 2026년 4분기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Economic Impacts	• GRI 201, 202, 203, 204, 205, 206, 415	2025년 3분기 ~ 2026년 1분기	• 2026년 2분기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Pollution	• GRI 305-6, 305-7, 306-3	2026년 5월 ~ 2026년 12월	• 2027년 5월

ESG Trend

II. SASB

1. 개정 취지와 포인트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11년 설립되어 산업별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식별하고 표준화된 공시 항목을 제시하기 위해 SASB 표준을 2018년 발표함
- SASB 표준은 투자자와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77개 산업별 표준을 통해 각 산업별로 기업이 일관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만, SASB 표준은 변화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기회, 측정 방식, 공시 관행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ISSB는 IFRS S1 및 S2와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2025년 7월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 이번 개정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을 통일하여 기업의 중복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표에 대한 포괄적 피드백 수렴을 통해 공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둠

2. 핵심 내용

1)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전면 개정

- ISSB는 산업 규모, 탄소배출량,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 국제 규제 및 투자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개의 우선순위 산업을 선정함. 해당 산업들은 ISSB의 중점 연구 주제인 생물 다양성, 인적자본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제기되어 왔던 분야임
- 이는 단순한 산업별 지표 조정이 아니라, 국제 기준 간 정합성 및 투자자 정보 유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우선순위 산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에 대한 순차적인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 7월 공개한 초안에서는 추출물 및 광물처리 부문(8개), 식음료 부문(1개) 내 9개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전면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말 3개 산업(농산물·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전력 및 발전)에 대한 개정안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임

표4. SASB 개정 우선순위 산업

부문명	산업명			
추출물 및 광물처리	• 석탄 사업 • 건축 자재	• 철강제조 • 금속 및 채광	• 석유 및 가스 – 탐사 및 생산 • 석유 및 가스 – 미드스트림	• 석유 및 가스 – 정제 및 마케팅 • 석유 및 가스 – 서비스
식음료	• 가공식품		• 농산물(2025년 말 개정 예정)	•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2025년 말 개정 예정)
인프라	• 전력 및 발전(2025년 말 개정 예정)			

- 이번에 공개된 9개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모든 항목의 개정은 국제 적용가능성, 상호 운용가능성, 재무제표 연계성, ISSB 기준 정합성, 투자자 요구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됨(다음 [표5] 참고)

ESG Trend

표5. 전면 개정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

구분	내용	예시
국제 적용가능성	특정 관할권에서만 적용가능한 지표 또는 관할권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지표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제고	• 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재정보증기금 관련 지표 삭제 (삭제) [EM-RM-150a.2] UST 재정보증기금을 운영중인 관할권에서의 비율 • 관할권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총재해율을 총기록가능재해율*로 수정 (수정) [EM-CO-320a.1] (2) 총 재해율 → 총기록가능재해율
상호 운용가능성	용어의 정의, 공시 요구사항 등의 통일을 통해 GRI 표준, TNFD 권고안, ESRS 등과 정합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GRI 305-7에서 정의한 대기오염물질 기준과 통일 (통일) 다이옥신/퓨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로 변경 • TNFD 권고안의 공간발자국** 개념을 도입하고 동일한 세부 정보 공시 요구 (추가) 사업장의 총 공간발자국(km²), 복원 면적(km²) 등 지표 추가 • 공급망 위험 관리 관련 ESRS 기준 도입 (통일) 공급망 내 노동 조건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인권 실사 포함) 공시 요구
재무제표 연계성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 연계성 강화	• 재무제표와 일관된 기준 적용 요구 (통일) [EM-CM-520a.1] 추정 및 확정 매장량(광물, 석유) 판단 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가정 및 산정방법 적용 요구
ISSB 기준 정합성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관련 지표에 대해 IFRS S1, S2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ISSB 기준 요구사항과 정합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물 위험 관련 지표에 IFRS S1 요구사항 반영 (통일) 물 관련 위험이 집중된 사업장 위치, 물 관련 위험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등 반영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IFRS S2 요구사항을 반영
투자자 요구	투자자 아웃리치를 통해 의사결정 유용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 수요가 신규로 확인된 지표는 추가함	•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세분화된 정보 요구를 반영 (추가) 기존 PM 지표를 PM10과 PM2.5로 구분 • 가공식품 산업의 제품 혁신 관련하여 투자자 관심을 반영하여 지표 추가 (추가) 투자 내역, 원재료·성분·가공방식 등의 혁신, 대체 단백질 도입 등

* 특정 기간 동안 작업 관련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건 수를 나타내는 안전 지표
** 특정 활동, 과정 또는 개체가 물리적 공간에서 차지하는 영역이나 범위를 의미

2) 41개 산업에 대한 특정 개정

- 우선순위 산업 개정사항 중 다음 5개 주제(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노동 관행, 근로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개정사항은 41개 산업에 일괄 반영하며, 이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지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표6. 특정 개정 내용 및 적용대상 산업

구분	개정 내용	적용대상 산업(41개)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1: (1) Scope 1 총배출량, (2) 배출량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율	화학, 용기 및 포장
	지표2: Scope 1 총배출량	펄프/종이 제품, 항공운송 및 물류, 항공, 크루즈선, 해상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지표3: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기타 양적 정보	식품 유통 및 배급, 폐기물 처리, 반도체
	지표4: Scope 1 배출량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분석에 대한 설명	폐기물 처리, 펄프 및 종이 제품, 화학, 용기 및 포장, 반도체, 항공 운송 및 물류, 항공, 크루즈선, 해상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에너지 관리	(1) 에너지 총소비량, (2) 구매전력 소비량, (3) (a) 자가 발전, (b)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재생전력 소비량	건축품 및 가구, 전자상거래, 대형 전문 유통 및 배급, 알코올음료, 식당, 약품 유통, 헬스케어 제공 등 21개 산업
물 관리	지표1: (1) 수원별 총 취수량, (2) 총 물 소비량, (3)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 (a) 취수 및 (b) 소비된 물의 비율	전자상거래, 가정 및 개인용품, 알코올음료, 비알코올음료, 식당, 바이오연료, 펄프 및 종이제품 등 15개 산업
	지표2: (1) 목적지 및 (2) 처리 수준별 총 물 배출량	가정 및 개인용품, 알코올음료, 비알코올음료, 부동산, 바이오연료, 펄프 및 종이 제품, 태양 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 화학, 용기 및 포장
	지표3: 물 관리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설명(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표 포함)	바이오연료, 화학, 용기 및 포장
	지표4: 부동산 산업 특유 물 관리 지표	부동산
노동 관행	단체 협약에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식품 유통 및 배급, 폐기물 처리, 항공, 자동차
근로자 건강/안전	(a) 기업 소속 근로자 및 소속 외 근로자의 (1) 사망자 수, (2) 총기록가능재해율	헬스케어 제공,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주택건설, 폐기물 처리, 연료 전지 및 공업용 전지, 산업 기계 및 제품, 레저시설 등 13개 산업

ESG Trend

3. 적용시기 및 향후 일정

- 현재 개정안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중 최종 개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임
- 한국회계기준원은 S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ISSB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2025년 11월 30일까지 IFRS재단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최종 기준 확정 후, 적용 시점을 12~18개월 사이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시행일은 의견조회 결과 분석 후 결정할 예정이며 ISSB는 SASB 개정 기준의 조기 도입을 권장하고 있음
- 한편, ISSB는 개정안 초안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육류·가금류, 전력·발전 등의 추가 산업군에 대한 개정 내역을 포함하여 2차 개정안을 2025년 말까지 발표하고, 이후 77개 전 산업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표7. 77개 SASB 산업 기준별 개정 현황

부문명	산업명	개정유형	부문명	산업명	개정유형	부문명	산업명	개정유형
추출물 및 광물처리 (8)	석탄 사업	전면개정	소비재 (7)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류	미진행	운송 (9)	항공 운송 및 물류	특정개정
	건축 자재	전면개정		가전제품 제조	미진행		항공	특정개정
	철강제조	전면개정		건축품 및 가구	특정개정		자동차 부품	특정개정
	금속 및 채광	전면개정		전자상거래	특정개정		자동차	특정개정
	석유 및 가스 - 탐사 및 생산	전면개정		가정 및 개인용품	특정개정		차량 렌트 및 리스	미진행
	석유 및 가스 - 미드스트림	전면개정		대형, 전문 유통 및 배급	특정개정		크루즈선	특정개정
	석유 및 가스 - 정제 및 마케팅	전면개정		완구류 및 스포츠용품	미진행		해상 운송	특정개정
	석유 및 가스 - 서비스	전면개정		광고 및 마케팅	미진행		철도 운송	특정개정
금융 (7)	자산운용 및 보관활동	미진행	서비스 (7)	카지노 및 게임	특정개정	식품료 (8)	도로 운송	특정개정
	상업은행	미진행		교육	미진행		농산물	전면개정(예정)
	소비자 금융	미진행		호텔 및 숙박	특정개정		알코올 음료	특정개정
	보험	미진행		레저시설	특정개정		식품 유통 및 배급	특정개정
	투자은행업 및 중개	미진행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미진행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전면개정(예정)
	주택담보 금융	미진행		전문 및 상업 서비스	미진행		비알코올제품	특정개정
	증권 및 상품거래소	미진행		바이오연료	특정개정		가공식품	전면개정
							식당	특정개정
헬스케어 (6)	바이오 기술 및 제약	미진행	재생가능 자원 및 대체 에너지 (6)	임업 경영	미진행	인프라 (8)	담배	미진행
	약품 유통	특정개정		연료 전지 및 공업용 전지	특정개정		전력 및 발전	전면개정(예정)
	헬스케어 제공	특정개정		펄프 및 종이 제품	특정개정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특정개정
	헬스케어 유통	미진행		태양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	특정개정		가스 유틸리티 및 유통	미진행
	관리형 의료	미진행		풍력 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	특정개정		주택건설	특정개정
	의료장비 및 의료품	미진행		전자제조서비스(EMS) 및 제조자설계생산(ODM)	특정개정		부동산	특정개정
자원변환 (5)	우주항공 및 국방	특정개정	기술 및 통신 (6)	하드웨어	미진행		부동산 서비스	미진행
	화학	특정개정		인터넷 미디어 및 서비스	특정개정		폐기물 처리	특정개정
	용기 및 포장	특정개정		반도체	특정개정		수자원 유틸리티 및 서비스	특정개정
	전기 및 전자장비	특정개정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특정개정			
	산업기계 및 제품	특정개정		통신 서비스	특정개정			

ESG Trend

III. 시사점

1. 글로벌 기준 준수를 위한 선제적 대응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상장법인 204개사 중 203개사(99%)가 GRI 표준을 적용하였고, 177개사(87%)는 SASB 표준을 적용하는 등 적용률이 높은 만큼 해당 개정은 향후 공시 체계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업은 2027년 적용을 앞두고 향후 1~2년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여 GRI 102(기후변화), GRI103(에너지)과 SASB 개정 지표를 파악하고 공시 항목별 정의·범위·단위·산정근거를 표준화하며 미흡 항목은 소요기간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미 IFRS S1·S2, ESRS 등의 공시기준에 맞춰 대응체계를 갖춘 기업에는 이번 GRI·SASB 개정이 기존 간 정합성을 높여 다중 보고 부담과 해석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체감될 수 있는 반면, 기존에 GRI 또는 SASB를 적용하던 기업은 공시 범위 확대, 데이터 신뢰성·내부통제 요건 강화, 공급망까지 확장된 관리체계 요구 등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그럼에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확정·시행되면 동일한 흐름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프레임워크 맵핑, 핵심 지표 재정의,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 보강 등 선제적 준비를 통해 전환 비용을 분산하고 향후 규제·투자자 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표8.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상장법인 보고서 작성기준(전체 204개사)

구분	GRI	SASB	TCFD	ISSB
공시기업 수 (개사)	203	177	154	16
비중 (%)	99	87	76	8

[출처] 한국거래소

2. 글로벌 규제 흐름에 부합하는 공급망 관리 역량 제고

- GRI와 SASB를 비롯한 글로벌 공시기준의 공시범위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급망 내의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와 협력 구조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공급망 내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보고는 이제 단순한 투명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적과 조치 사항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공시 기준을 참고하여 공급망 관리 역량 제고 및 가치사슬 전반의 데이터 관리 강화 필요함
- 특히 공급망 리스크 관련 해외 규제¹³ 및 국내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업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이 추진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은 규제 준수와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공급망 ESG 위험 식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¹³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규제수준도 낮아지는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관련 규제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의 경우에도, 지난 9월 3일 독일 연방내각이 기업들의 문서화된 사전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승인함(의회 승인 필요). 이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축소하는 조치로, 실사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25.09.03 임팩트온). 관련 규제들의 완화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공급망 내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s)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및 불만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의 모니터링 및 사후 소명 요구 등에 대비하여 사내 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9월호에서는 9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중소중견대 [부산] 2025년 ESG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실수요에 맞춘 ESG 경영 지원	- (사업대상) 부산시 관내 제조업 영위 기업 (본사가 부산 소재) - (사업내용) 기업이 원하는 ESG 사업(ESG 경영 추진을 위한 ESG 컨설팅, 탄소저감 설비, 협력사 동반 프로그램 등) - (지원규모) 5개사 지원(기업당 1천만원 지원, VAT 및 초과분은 기업 부담)	9월12일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37
중소중견대 2025년 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 (지원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 - (지원규모) 약 1,000억원 -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시설 자금은 500억원, 연구개발(R&D) 자금은 100억원 이내	9월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ESG지원팀 탄소중립융자센터 070-8895-7186, 7388, 7017, 7264
중소중견대 2025년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시행 공고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과 ESG 실천 활동에 대한 인정 및 홍보 등을 지원	- (인정대상)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경영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 - (평가방법) 2024년에 추진한 농어촌 ESG 활동에 대해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3개 부문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통해 평가(80점 이상 취득 시 인정) - (인센티브) 인정서(패) 수여,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ESG컨설팅, 언론 홍보, 정부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등 혜택 제공	9월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부 02-368-8957
중견중소 2025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국내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 종합적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 점검·진단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집 완료 시 종료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 02-6191-6106, 6195, 6096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이란?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은 상장회사 임직원을 위한 Governance 중심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주주총회,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입니다.

Why Governance?

기업경영의 핵심은 거버넌스이다.

-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점검
-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 2026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프리뷰
- 상장기업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지원

※ 거버넌스 분야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모집요강

교육 일정 | 2025.09.03.(수) - 2025.11.26.(수)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총 12회)

교육 대상 | 상장회사 임직원

교육 장소 | 대신파이낸스센터 5F 강당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 1가)

모집 인원 | 60명 내외

수강 신청 | 2025.08.04(월) - 2025.09.01(월)

***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수강 신청 (👉 클릭)**

- 수강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수 강 료 | 1인당 350만원 (VAT별도)

문의처 | 이필화 책임연구위원
☎ 02-2084-7813
✉ philwha.lee@daishin.com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2025~2026년 상장회사가 주목해야 할 거버넌스 트렌드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수강 신청

